(앞면)

			흐	기질환	자으	의료비 7	디원	! 신청 서	l	신규	□ 기존	
	성	명						주민등록번	호			
	질 혼	한 명								(상병	흥코드 :)
등 록 대상자	전화	번호						휴대폰번호	হ			
								전자메일주	소			
	주 소							정보수신여	부	□전자메일 □휴대폰 □수신거부 * 의료비지원사업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 정보 제공		
세대주 (보호자)	성	명			민등록번호				관계	1		
	주	소										
	전화	번호						휴대폰번호	호			
이용 의료 기관	기 관 명						요양기관번	호				
	주 소							전화번호				
								주 치 의				
환자 가구	환자와의 관계		성명	성명 주민등록번호			주소			내여부 록사유)	취업상태	전화번호
	*	배우	² 자 관계 ¹⁾ (□ 법률혼				□ 사실혼			□ 사실상 이혼)		
	환자와의 관계		성명	l명 주민등록번호		주소		-	가구 원수	소득	재산	전화번호
부양 의무자 가구												
신청자 (환자)계좌	금융기관명					예금주	7月至			<u></u> 라번호		
지원대상 신청구분				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				□ 보장구구입비 □ 기침유발기 대여료				
	□ 간병비 □ 저단백 햇반					□ 특수조제분유						
위와 같이	희귀	질환	자 등록	류을 신청합니	니다.							
											년	월 일
								신청인) 성명				명 또는 인)
				1	특별자			인과의 관계 치도지사		군수·구		!청의 경우) !소장) 귀하

※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십시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회귀질환자 → 접수 → 소득 • 재산조사 → 검토

→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결정 → 결정사항 통보

- 1. 환자가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
- 지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(동거인은 제외)로서,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
- ※ 단,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또는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리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
-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
-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
- *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, 30세 미만의 미혼부·모인 경우,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
-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환자가구 가구원과 생계나 주거를 모두 같이하고 있으며,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
- 2. 부양의무자가구의 범위
- 부양의무자의 범위

작성 요령

서류

- · 신청자(환자)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·딸 등)
- 신청자(환자)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(며느리 등)
-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자
-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-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아 하는 부양의무자 2초 이내의 혈족의
- 1. 환자 제출서류
- 1)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
- 2)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,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)
- 3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환자를 기준으로 제출)3)
- 4) 신청자(환자)의 통장사본
- 5)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(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하며 정기재조사 시에는 산정 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)
- 6)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(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, 부양의무자가구 에서도 해당자는 제출) 7) 장애등급 확인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장애인 증명서, 장애등급결정서 등)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0
- <u>확인)</u>
- 8)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확인)
- 2.부양의무자 제출서류
- 1)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- 2)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- 3.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
- 주민등록등본⁴⁾
- 2) 소득·재산관계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3) 금융재산관계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1.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는 부정 수급한 의료비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2.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조사를 거부, 방해,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처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, 조사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(부양의무자의 조사, 신청자의 자료 제출기한 지연 등)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60일 이내 처리(년 월 일)
- 2)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원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외한 기준은 환자가구 기준 적용
- 3)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제출할 수 있음,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
- 4)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며 보건소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

¹⁾ 해당자에 한함